(주) 퍼 팩 트 투 어

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어린이재단빌딩 402호 TEL.02-777-7729 FAX.02-777-8060

< 공 지 >

★ 새롭게 적용되는 베트남 출입국법 공지 (※ 추후 변경가능성 있으니, 참고바람) ★

- 아 래 -

I. 이 법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발효, 시행된다.

1. 비자

- 입국비자는 single (단수)또는 multi (복수)로 신청이 가능하고 입국목적은 변경 불가이다.
입국자가 베트남에 체류 시, 입국신청 때의 목적에 맞게 행사해야 하고,
만약 체류목적을 변경하려면 베트남을 출국해서 본인의 입국 목적에 알맞게 비자를 재 신청해야 한다.
(제7조 1항).
=> 현재 15일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나 원칙은 순수한 관광목적에 한해서며 여러차례 방문할 경우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방문으로 간주하여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차후에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.
업무상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비자를 받고 나가시기를 권합니다.
15일 이상 체류할경우 불법체류로 분류되어, 차후 방문하실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)

※ 비자대행 가능한 종류 및 체류목적 분류표 참조 ※	
B3 (3개월단수/복수)	베트남 기업체와 비즈니스 업무를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
C1 (1개월단수/복수)	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
C2 (3개월단수-다문화)	그 밖의 목적(친척방문등)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외국인

- 15일무비자 체류경우 (제31조 01항 d목):
+ 베트남과 이러한 합의를 유지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한다.=> 대한민국 해당.
+ 여권의 기한은 만료 직전 최소 6개월이야 된다.
+ 무비자 재 입국은 전번 베트남 입국 후 출국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 비로소 재 입국 할 수 있다.
(제20조01항). => 비자소지 출입국시는 적용안되니, 잦은 출입국을 원하시면 반드시 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.
이 규정의 목적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해 불법노동을 할 것을 방지 하는데 있다.
30일이 안되는 경우 베트남 재 입국시에는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해야 한다.

2. 입국 불허:
- 부모 동반 없거나 보호자 동반 없거나 동반위임을 받는 자의 동반 없는 14세 미만 청소년
- 추방당한지 3년이 안되는 자.
- 강제출국당한지 6개월 안되는 자.

PERFECT TOUR
PERFECT TOUR